

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여노연의원 외 6인

2. 개정 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 및 제30조와 「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,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과 성주군 조직개편(안)에 따른 의정팀 신설과 담당에서 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당연직 간사 명칭 변경(안 제9조 4항)
- “의사담당료” → “의정팀장으로”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「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
- 예 고 : 의견없음(2022. 11. 8. ~ 11. 14.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과 성주군 조직개편(안)에 따른 의정팀 신설로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

- 주요 내용은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당연직 간사 명칭을 의사 담당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- 법리 검토 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성주군 조직개편(안)에 따른 변경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것으로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